

「고흥군의회에서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와 「고흥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12월 22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회에서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사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 1. 13. 시행)으로 위임조례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고흥군의회에서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 (안 제1조)

3. 자치법규안: 별도 붙임

4. 예고기간: 2021. 12. 22.~12. 27.(5일간)

5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2. 27.(월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의회의장(참조:

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(3) 그 밖의 참고 의견 등

나.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(1) 일반우편: (59542)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 고흥군의회의회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(2) 전화: 061-830-6065, FAX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 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 3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제4항”을 “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3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